

명예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

2003. 6. 1 제정
2014. 3. 1 일부개정
2020. 8. 21 일부개정
<학사팀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함) 명예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과 자격) 본교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예학사학위를 수여한다

1. 사회·국가적 공헌이 현저하여 본교의 명예를 크게 빛낸 사람
2. 본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

제3조(인정 학과(부)) 명예학사학위의 학위증서에 기재하는 소속은 해당자의 입학 당시 소속 학과(부)로 한다.

제4조(선정절차) ① 명예학사학위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.

1. 해당 대학 교수회의 결정을 거쳐 대학장이 추천
2. 학적관리위원회의 심의
3. 교무위원회의 심의
4. 총장의 승인

② 제1항 제1호의 추천은 공적조서(증빙자료 포함)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다.

제5조(명예학사학위증서) ① 총장은 명예학사학위 수여대상자에게 학위증서([별지서식1])를 수여한다.

② 학위증서의 수여 시기는 매년 2월과 8월, 연 2회로 한다.

③ 명예학사학위는 행정관청에 대한 보고·등록의 대상이 아니다.

제6조(명예학사학위의 취소) 명예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학사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1]

명예 호

명 예 학 사 학 위

성 명 : ○ ○ ○

○○○○년 ○월 ○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○○ 대학 ○○ 학과 ○ 학년 재학 중

하였기에 명예학사학위 수여를 추천함

년 월 일

○ ○ 대학장 ○ ○ ○ (인)

위 추천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

년 월 일

고려대학교 총 장 ○ ○ ○ (인)